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운영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작성 대상으로 하므로, 20일 미만인 경우 공시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예: 학교별 학점인정(출석일) 기준에 따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21일로 출석처리 하였더라도, 실제 출석일이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19일 경우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로 운영된 경우 시간환산 없이 1일의 출석일로 집계하여 공시 실적 제출
- ※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와 달리 운영되거나, 1주간 4일 미만으로 운영되거나, 1일 6시간 미만으로 운영된 국내·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는 불인정(총 시간수 환산 인정 등 불가)
- ※ 대학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습기간 중 교내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 일자 등은 실적으로 불인정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재택실습은 출석일로 포함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의 ‘수업’요건을 갖추어,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부여되어야 함
 - ※ 수업 요건
 - ①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 ②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 ③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운영(직무수행 및 지도) 계획
 - ④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 ⑤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 ⑥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현장실습생-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공시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부 및 평가표로 운영되어야 함
 - ※ 학과별 정원내·외 재학생 수는 필요에 따라 대학정보공시 ‘4.마. 재적 학생 현황’의 재학생 수 활용(현장실습 운영현황 항목에서는 공시하지 않음)
- 【학점수】**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해 부여하는 학점수 입력(복수과목 개설시 학과별 최소 학점수와 최대 학점수만 입력)
 - ※ 소계, 합계는 학기별, 당해연도 학점수를 합산하지 않고 해당학기, 해당연도 최소 학점과 최대 학점을 작성
- 【이수학생수】** : 정원내·외 학생 중 2024학년도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 수를 입력
 - 학칙으로 정한 현장실습생 대상 학년 및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 ※ 동일 학과에 주/야간 과정이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우 이수학생수를 구분하여 작성
 - 학과에 이수학생이 없으면 ‘0’을 입력
 - 정규학위과정인 외국인 유학생은 포함하나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외국 학생(어학연수생, 방문학생, 그 외기타)은 현장실습 이수학생수에서 제외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별도 법령 및 자격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 ※ 현장실습 제외대상(아래 표 참조)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르며, 각 학교의 현장실습 형태가 어떤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자격취득과 관련이 없는 현장실습은 포함하되 해당 학생의 원소속 학과 실적으로 입력

제외대상 현장실습

- ①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등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고시」에 따른 사서 실습
- ② 평가·인증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의 현장실습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조종사, 해기사 등

○ 이수학생수는 학생의 원 소속학과 실적으로 입력

- ※ 한 학생이 여러 학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또는 복수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하고 해당 학기별로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학기별로 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1개 학기 기준 1회의 실적만 인정함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학생은 아니나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이수한 경우, 이수 학생수는 해당 학생의 원 소속 학과 실적으로 입력

○ 실습기간과 학점인정(부여) 시점이 다른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요건(수강신청 등)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하계방학에 수강신청 없이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2학기에 수강신청을 받아 학점 처리하는 형태(후학점 처리) 등은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형태임

○ 아래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현장실습학기제로 학점을 부여하거나, 공시 대상 실적으로 제출하면 안 됨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불인정 기준을 공시 대상 실적으로 제출한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고등교육법」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임

불인정 기준

- ①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 ② 실습기관과 학생 간 실시한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 ③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④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 ⑤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국외의 경우만 산재보험 가입 제외)
- ⑥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⑦ 표준 서식(별지 제1호~제3호 서식)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

【보험 가입학생수】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 중 보험에 가입한 학생수를 입력

○ 대학 및 실습기관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대학 가입), 산재보험(실습기관 가입)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 ※ 상해 및 산재보험 적용 기간이 실습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인정

【상해보험 가입학생수】 : 대학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학생수를 입력

【산재보험 가입학생수】 : 실습기관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학생수를 입력

【실습기관수】 :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 국가, 지자체 및 대·중소기업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한 기관수를 입력

【학교주도】 :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된 실습기관수를 입력

【실습기관주도】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된 실습기관수를 입력

○ 학교-실습기관 쌍방 간 공적 문서(공문 및 공고문 등)를 근거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메일 등을 통한 개인 간의 합의는 쌍방 간의 공적문서에 대한 근거로 불인정

※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다음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구비·보관하여야 함

- ①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 ②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
- ③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
- ④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

【실습지원비 수령 학생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실습기관으로부터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학생수를 입력

○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만 인정하며,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음

※ 실습지원비는 학교를 통해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 공시실적으로도 불인정

※ 대학에서 국고 및 교비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비, 장학금 등은 실습지원비로 인정하지 않음

(예 1: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실습지원비 1,545,555원을 수령하고 대학으로부터 지원비를 515,185원을 수령하는 경우 실습지원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1,545,555원임)

(예 2: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실습지원비 2,060,740원을 수령하고, 대학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에 따라 기업에 국고지원금 515,185원을 지급하는 경우 실습지원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2,060,740원임)

※ 실습지원비 수령학생수 합계는 이수학생수와 일치해야 함

※ 실습지원비 지급 수준이 최저임금(환산액) 기준 75% 미만인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최저임금 75% 이상】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의 산출 및 지급수준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월/주 단위 환산액 기준) 75% 이상~100% 미만으로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학생수

【최저임금 100% 이상】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의 산출 및 지급수준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월/주 단위 환산액 기준) 100%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학생수

(예 1: 1주 5일, 1일 8시간 운영기준 월 단위 실습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단위 실습지원비 환산 시 2024년 최저임금(월환산액) 100%는 2,060,740원, 75%는 1,545,555원임)

(예 2: 1주 5일, 1일 8시간 운영기준 주 단위 실습시간은 48시간이며, 주 단위 실습지원비 환산 시 2024년 최저임금(주환산액) 100%는 473,280원, 75%는 354,960원임)

【재택실습 이용학생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재택실습을 이용한 학생수를 입력

【실습기간의 25% 이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택실습을 이용한 학생수

【실습기간의 25% 초과】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택실습을 이용한 학생수

재택실습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7조(재택실습)

- ① 국가재난 발생 시,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 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재택실습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 참고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현황은 한국연구재단(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실제 출석일수, 산재보험 가입, 실습지원비 등에 대한 확인(실사) 실시 예정